

주관국(과)	시 설 명	위 치	주 요 기 능
보건복지국 (노인복지과)	○시립노인요양원	노원구 상계동 산51	요보호 저소득노인 수용보호
	○시립양로원	강동구 고덕동 317-23	"
	○시립엘림노인요양원	경기 군포 산본동 1100	"
	○시립중계노인복지관	노원구 중계동 501-1	"
	○시립엘림경로원	경기 군포 산본동 1100	노인들에 대한
	○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	관악구 봉천동 726-3	취미·여가·건강관리
	○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	노원구 하계동 170-1	등의 노인복지프로그램
	○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	구로구 구로동 25-1외3	운영
	○시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	중랑구 면목동 178-8	"
	○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	성북구 종암동 66-25	"
	○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	은평구 진관외동 산140	"
	○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	강서구 등촌동 661-4	"
	○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	마포구 창전동 140	"
	○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	강북구 수유동 122-3	"
	○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	성동구 마장동 798-1	"
	○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	금천구 시흥동 558-1외11	"
	○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	도봉구 쌍문동 19-12	"
	○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	용산구 한남동 108-1외5	"
	○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	동작구 대방동 335-10	"
	○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	동대문 청량리동 11-1	"
○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	서대문구 천연동 117-3외2	"	
○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	광진구 군자동 364-16	"	
○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	강동구 명일동 48-10	"	
보건복지국 (장애인 복지과)	○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	강동구 고덕동 317-24	장애인복지프로그램 운영
	○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	동작구 신대방동 395	"
	○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	노원구 상계동 771	"
	○시립상이군경복지관	노원구 상계동 771	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
	○시립맹인복지회관	노원구 상계동 771	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
	○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	노원구 상계동 771	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
	○시립곰두리체육센터	송파구 오금동 51	장애인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
	○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	동작구 신대방동 395	정신지체인 복지프로그램 운영

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“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”로 한다.</p> <p>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라 한다)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·시행계획 등</p>
---	--

<p>중요사항 연구·조정</p> <p>2.노인·장애인복지 및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·제도개선사항 심의·건의</p> <p>3.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</p> <p>4.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·의결</p> <p>5.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·건의</p> <p>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(1)부시장, 여성정책관,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된다.</p> <p>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행정(1)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③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, 여성정책관,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.</p> <p>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사회복지, 노인·장애인복지와 아동·여성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2.사회복지, 노인·장애인복지 또는 아동·여성보호사업을 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</p> <p>3.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</p> <p>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위촉된 위원의 임기 동안 이 조례에 의하</p>	<p>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</p> <p>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나병관리사업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탁사업)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(이동진료사업 포함)</p> <p>2.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</p> <p>3.한센병의 조사·연구사업</p> <p>4.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지 및 재활사업</p> <p>5.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</p> <p>6.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·운영</p> <p>7.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</p> <p>8.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</p> <p>9.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</p> <p>10.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</p> <p>제3조(사업의 위탁)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시설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에게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사업보고)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</p>
---	--